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00시 03분



목차

목차	2
과태료	3
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의 기준	3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안내	3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**자동차과태료**
- 건설기계과태료
- 이륜자동차과태료
- 압류등록/해제

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의 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위반기간	과태료
임시운행허가(신규등록지연)	임시운행허가기간 10일 경과 후 10일 이내	30,000
	10일 초과 매1일 초과 시 마다	10,000
	최고	1,000,000
변경등록지연	타시도 전입신고일(전국번호판 제외)또는 기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	20,000
	90일 초과 매3일 초과 시 마다	10,000
	최고	300,000
말소등록지연	폐차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	50,000
	10일 초과 매1일 초과 시 마다	10,000
	최고	500,000
정기검사지연	검사기간 만료일경과 30일 이내	20,000
	30일 경과 후 매3일 초과 시 마다	10,000
	최고	300,000

※건설기계 과태료(변경등록지연 최고 200,000 / 정기검사지연 최고 400,000)

구분	위반기간	범칙금
이전등록위반	매매일로부터 15일, 증여일로부터 20일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	100,000
	10일 초과 매 1일 초과 시 마다	10,000
	최고	500,000

▪ **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주요내용**

- › **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(최초 3%, 매월 1.2%, 최고 75%까지)**
- › **관허사업의 제한(3회 이상 체납, 1년경과, 체납액합계 500만원 이상)**
- › **신용정보의 제공(체납 도는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)**
- › **고액 상습체납자 법원결정에 의해 30일 이내 감치(3회 이상 체납, 1년경과, 체납액합계 1,000만원 이상)**
- › **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→ 이전등록 제한**
- › **30만원 이상,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→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**

※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할 경우 20% 과태료 경감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